

# 리듬체조 심판 운영 매뉴얼

2023. 10. 11.



대한체조협회  
KOREA GYMNASTICS ASSOCIATION

##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본 매뉴얼은 대한체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규정 제6장 26조에 따라 제정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운영 매뉴얼이라 칭한다.

## 제2장 심판자격 및 등록

**제2조(심판자격 취득)**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에서 개최하는 심판강습회에 참가하여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심판자격을 취득 한 후 경기인등록규정 제30조에 따라 심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3.>

② 심판강습회 시험 출제자는 심판자격 취득으로 간주하여 시험을 면제한다. (FIG와 동일) <개정 2022.12.27.>

**제3조(심판강습회 참가자격)** 심판자격 취득을 위하여 심판강습회에 참가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한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개정 2021.09.13>

① <삭제 2022.1.18.>

② 만 18세 이상으로 선수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제4조(심판자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① 경기인등록규정 제33조(등록 결격사유) ①항에 해당하는 사람

② 당해년도 협회 선수등록 (예정)인 사람 <개정 2021.09.13>

③ 타 체조종목(기계체조, 트램폴린체조, 에어로빅체조, 아크로바틱체조, 생활체조, 파크루) 심판자격 소지한사람 <개정 2021.09.13>

**제5조(심판자격 구분)** 심판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국제심판 : 국제체조연맹 심판자격 소지한사람으로서 당해 사이클에 한함(4년 주기) <개정 2021.09.13>

② 국내심판 : 1급, 2급, 3급, 4급, 5급 <신설 2022.1.18.>

※ 상기 ②는 별도 심판자격과정 운영지침(심판등급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3장 심판 배정과 업무

**제6조(심판배정 원칙)** 심판배정은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들로 심판위원장의 주관하에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분야별 심판을 추천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2.12.27.>

① 기피 및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심판은 심판배정에서 제외한다. (당해 연도 동일 소속 선수의 경기 출전 시 심판 기피 대상에 해당함) <삽입 2022.12.27.>

② 모든 대회 DB, DA 및 책임심판은 심판위원을 배정하되 심판의 부족시 국제심판 및 1급 심판 또는 타 분과위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23.> <개정 2022.12.27.>

③ 모든 대회 심판은 심판위원, 국제심판, 국내심판 또는 타 분과위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상위 급수 심판을 우선 배정한다. <개정 2022.3.23.> <개정 2023.10.11.>

④ <개정 2022.3.23.> <삭제 2023.10.11.>

⑤ <개정 2022.3.23.> <삭제 2022.12.27.>

⑥ 단,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심판은 각 시·도의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하며 자격 미충족자는 심판배정에서 제외 한다.<개정 2022.12.27.>

※ 추천대상자(심판업무 수행실적)

- 소년체전 : 전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인 사람
- 전국체전 : 시행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인 사람
- 단, 1회 이상인 심판을 추천할 수 있으나 심판 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0.11.>

\*\* 상기 전국규모대회라함은 대한체조협회 주관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21.09.13>

⑦ 심판의 구성은 DB심판 2명, DA심판 2명과 A심판 4명, E심판 4명, 라인심판과 계시심판을 배정한다. 심판의 부족시 A 또는 E심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개정 2022.12.27.>

⑧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심판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⑨ 국가대표 선발전의 경우 국제심판, 심판위원, 국내1급 ~ 2급 심판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심판 부족 시 국내3급 ~ 4급 심판을 배정할 수도 있다. <신설 2021.09.13.>

⑩ 5급은 리듬체조 선수 경력이 없는 심판으로서 라인심과 타임심에만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⑪ 최종점수가 전광판에 표출된 후에는 점수를 정정 할 수 없다. 단, 기계적 결함일 경우에는 해당 심판의 채점지를 확인 후 점수를 재표출하고 정정 안내방송을 한다. <신설 2022.3.23.>

⑫ 심판회의(심판추첨) 후 배정명단을 참가 지도자에 배포하고 경기장 내 게시한다. <신설 2022.12.27.>

⑬ 별도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심판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3.10.11.>

## 제4장 심판활동 및 관리

### 제7조(심판활동 및 관리)

① 대회 참가심판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판배정에서 제외한다.

가. 심판업무와 관련한 심판위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

나. 심판회의 및 심판교육에 지각 또는 불참한 사람

다. 심판배정 후 상호간 임의교체한 사람

라. 점수와 관련하여 다른 심판에게 항의한 사람

마. 고의성 없는 실수에 의한 오심을 1차 경고 후 반복하여 오심을 한 사람

바. 전국체육(소년)대회에서 해당 시·도 심판이 해당 시·도 선수와 팀에게 심판들이 판정한 점수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난 점수를 부여한 사람

사. 민·형사상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심판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해당대회의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제대회 파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1.09.13>

② 대회 참가 심판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판배정에서 제외한다.

가. 관련규정에 의거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다른 심판의 점수를 수정한 경우

나. 점수와 관련하여 담합하거나 고의로 오심을 범했을 경우

다. 심판석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경우

라. 경기 진행 중 심판의 품위를 훼손시키거나 욕설 및 폭력행위 등 경기장질서를 문란 시키는 경우

마. 협회 관련 공문서에 대하여 열람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열람한 경우

③ 심판과 관련된 상기 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체조연맹의 기술규정 및 채점 규칙에 준하며,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④ 별도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심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12.27.>

## 제5장 이의제기(소청)

**제8조(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제체조연맹 및 협회 관련규정(심판위원회 규정 제22조 ⑤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점수 발표 직후 또는 1분 이내에 구두로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구두 이의제기 이후 4분 이내에 서면(지정양식)으로 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시 공탁금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을 납부해야하며, 납부 방법은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련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개정 2021.09.13.>  
<개정 2022.1.18.>

③ 이의신청은 FIG규정대로 소속팀 코치에 의해 해당 소속선수의 난도(DB, DA)점수에 한하여만 가능하다. <개정 2022.12.27.>

④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는 공정평가심사단(부회장, 심판위원장, 심판부위원장, 해당 종목이 아닌 상급 국제심판)을 별도로 구성하여 이 중 최소 3인 이상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1.09.13.> <개정 2021.1.18.>

⑤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결정은 소속팀에 통보하고 경기장내 방송을 통하여 공지한다.

## 제6장 심판평가

**제9조(심판평가)** ①심판평가는 심판위원회규정 제19조에 의거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국제체조연맹 및 협회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판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심판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의 오차범위  $\pm 0.5$ 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개정 2021.09.13.> <개정 2022.12.27.>

1. 30% 이상: 구두경고

(예시) 채점 점수 10명 중 3명 이상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2. 40% 이상 : 차기 대회 쉐도우 심판 이수 또는 라인 심판 배정

3. 삭제 <2022.12.27.>

4. 편파판정은 비율과 상관없이 국내심판 배정 및 국제심판 파견을 배제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5. 우수심판으로 평가된 심판은 체육회 및 협회 심판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7장 국제대회 및 심판강습회 파견 <개정 2022.12.27.>

**제10조(국제대회 및 강습회파견)** 심판위원회는 국제대회 및 국제심판강습회 파견 시 체육회나 협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상위급수 자, 해당 대회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 한 자(급수, 심판경력(클린심판아카데미, 국내대회 심판참여횟수 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8장 경기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

**제11조(경기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

① 소속 관계자가 심판에게 항의할 경우 1차시에 경기구역 접근을 금지하고, 2차시에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소속 관계자가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할 시에는 해당 경기

의 최종점에서 0.50점 감점 및 경기구역 접근을 금지하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소속 관계자와 관련하여 상기 외의 별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체조연맹의 기술 규정 및 채점규칙에 준하며, 심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상기의 소속 관계자란 협회(체육회)의 선수 및 지도자 등록시스템에서 등재된 대표, 단장, 주무, 감독, 코치, 선수를 말한다.

#### **부 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심판등록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9. 13.)**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10. 8.)**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2.1.18.>

#### **부 칙 (2022. 1. 18.)**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3. 23.)**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매뉴얼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